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안내

사업 개요

2021년 운영 계획

향후 일정

FAQ

질의 응답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지원 대상)
 -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1명,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20명
- (지원 금액)
 - 의과대학생 1인당 연간 2,040만원, 간호대학생 1인당 연간 1,640만원
 -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 공중보건장학금을 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국가장학금 반환 필요(중복 지원 불가)

사업 개요

- (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 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
 - * 선정되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 요청에 따라 일부 기간만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6개월 단위)
- (지원 가능 지자체)
 - 의과대학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중 1개 지자체 선택
 - 간호대학 :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중 1개 지자체 선택
- (지원 절차) 학장 추천 → 지자체 신청 → 복지부 선발 → 장학금 지원(개인 계좌)

사업 개요_추진 체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장학생 선발	사업지침 확정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장학생 추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장학생 신청	시·도
	면접 등 선정평가	선발위원회
	장학생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장학금 교부	장학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도
	장학금 교부	보건복지부
장학생 관리	학사 보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시·도
	학사 관리 및 위원회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비정규 교육 및 멘토링 체계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졸업 후 관리	수련 과정	운영위원회
	의무복무 관리	운영위원회
	경력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사업 개요_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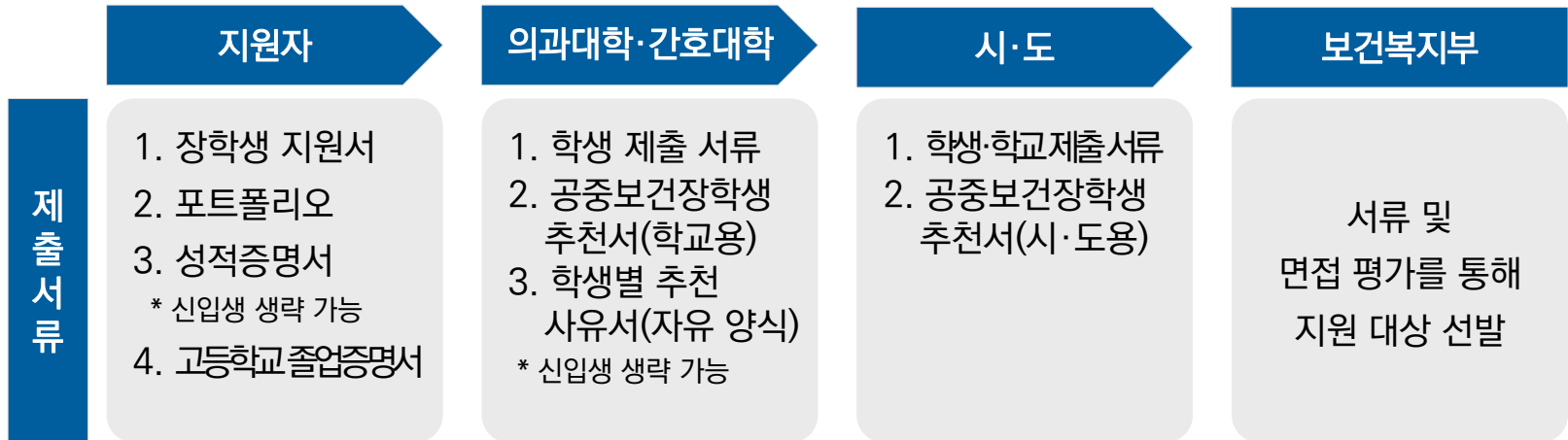
구분		역할		구성원
보건복지부		전반적인 관리·감독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사업 위탁 운영		-
위원회	선발위원회	- 시도에서 추천한 학생들에 대한 면접 및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장학생 선발 - 선발기준 및 평가방법 등 제도 개선사항 발굴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교수, 간호대학 교수, 지방의료원 의료진,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운영위원회	교육	- 제도 운영 전반과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 - 멘토링 체계 운영을 통한 장학생 지도 내용 공유 - 교육 프로그램(안)에 대한 자문	보건복지부, 각 그룹별 멘토,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배치	- 지자체의 의무복무 대상 의료기관 수요와 배치 조정 - 지자체·의무복무 기관, 장학생 간 이견 발생 시 중재 및 권고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2021년 운영 계획

2021년 운영 계획_장학생 선발

• (모집 및 신청)

- 기한 : 3월 31일(수) 18:00 학교 행정실 제출
- 절차



* 추후 근무하고 싶은 한 개의 시·도를 선택하여 지원(중복 지원 금지)

* 신입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학생별 추천사유서 생략 가능

2021년 운영 계획_장학생 선발

- (선발)

- 면접 및 서류(포트폴리오 등)를 통해 학업 능력,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의지, 향후 활동계획 등 평가

* 면접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면접일은 지원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

2021년 운영 계획_장학생 선발

지원자 작성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지 원 자	성명	한글		생년 월일		사진 (3cm×4cm)
		한자				
	주소					
	전화 번호			메일 주소		
	재학 학교	대학교 학과	대학 학년	희망 지원 기간	학기	
직전 학기 평점 평균		만점 (체크)	4.3 4.5	고등학교 소재지역		희망지원 지역
	* 직전 학기 성적을 기재 * 신입생인 경우 미기재			*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기재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면허취득 후 소정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하며 공중보건장학생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2. 성적증명서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 총 1,200자 이내로 작성함(공백 제외)

- 학창시절 활동(600자)
- 대학 재학 활동 및 계획(300자)
- 졸업 이후 활동 계획(300자)

2021년 운영 계획_장학생 선발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혹은 간호대학장(간호학과장)작성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년	주소	희망 지원 기간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혹은 간호대학장(간호학과장)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3.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
4. 성적증명서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2021년 운영 계획_장학금 관리

- (장학금 신청 및 교부)
 -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약서,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의무복무 서약서* 포함)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 선발된 장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일 경우 해당 시·도 담당자의 입회 하에 작성된 의무복무 서약서 필수 제출

2021년 운영 계획_장학금 관리

장학생 작성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성명	재학학교	학년	주소	연락처
장학금 지급 신청 기간				
학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 명의여야 함

상기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공중보건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제17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장학금 지급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학 학교, 학년, 주소, 전화번호 등 · 장학금 지급 관련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학적 변동사항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의무복무 종료 기간까지 위 이용목적 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의무복무 종료 이후에도 법령상 의 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021년 운영 계획_장학금 관리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추가 작성

의무복무 서약서

공중보건장학생 ○○○는 ○○시·도 담당자의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 ○○○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지원하여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면허 취득 후 의과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입회자 : 소속 부서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자 : 재학 학교 :

성명 (서명 또는 인)

2021년 운영 계획_재학 중 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
 - 선발 장학생 지도를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비정규 교육)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연 2회)
 - 장학생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및 심포지엄 참석(4회 이상)
- (멘토링 체계)
 - 권역 공공보건의료전문가가 그룹별 멘토 역할 수행
 - 장학생은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분기 1회)
-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학사 진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 관리, 비정규 교육 이수 실적 관리, 멘토링 체계 운영 수행

2021년 운영 계획_졸업 후 관리

- (배치·경력 관리)

- 「운영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장학생 배치 조정, 의무복무 기간 단축 심의 등 졸업 후 관리를 총괄
-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구성하며, 배치 관련 별도의 자문위원 위촉 가능

- (수련)

- 의사의 경우 수련 기관 및 전공 자유 선택

-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의무복무 실적 관리, 경력 개발 지원, 인센티브 관련 정보 제공, DB 등록 관리 등을 수행

2021년 운영 계획_졸업 후 관리

- (의무복무 실시)
 -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과 동일하되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한정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
 - 시·도지사 배치 요청을 고려하여 결정
 -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 가능
 -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
 - 보수는 소속 기관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

2021년 운영 계획_졸업 후 관리

- (의무복무 유예)
 - 의무복무는 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하고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병역의무,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유예하거나 의무복무의 일시적 중단이 가능

향후 일정

향후 일정_제출 서류

작성주체	제출 자료		제출처
(1) 지원자	지원서	별도 서식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시·도→보건복지부)
	포트폴리오	1,200자 이내 자유 서식	
	성적증명서 * 신입생일 경우 생략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2) 의과대학장(의학 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 (간호학과장)	지원서	(1) 제출 서류	학생이 졸업 후 근무하고 싶은 시·도
	포트폴리오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추천서	별도 서식	
	학생별 추천사유서	1페이지 이내 자유 서식	

* 제출 서류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포트폴리오는 학창시절 활동(600자), 대학 재학 활동 및 계획(300자), 졸업 이후 활동 계획(300자)에 대해 총 1,200자 이내로 작성함(공백 제외)

향후 일정

- (모집) 3/31(수) 18:00 각 의과대학(의전원) 혹은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
- (면접) 4/8(목)~18(일) 중 예정
- (최종 결과 발표) 4월 중 예정
- (장학금 지원) 4월 중 예정

* 사업 안내 영상  <https://youtu.be/rTrapfcMtfU>

FAQ

FAQ

Q) 장학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입니다(학년 무관).

Q) 장학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A) 등록금과 관계없이 연간 의대생은 2,040만원, 간호대생은 1,640만원이 지원됩니다.

Q) 장학금 신청은 학교가 소재한 지자체에 신청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학생이 졸업 후 근무하고 싶은 지역에 신청하는 것으로 2021년에는 다음의 시·도가 참여합니다.

- 의과대학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 간호대학 :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Q)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다른 장학금은 수혜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하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반환하고 공중보건장학금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FAQ

Q)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자체가 학생 개인 계좌로 2회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Q) 장학금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최소 2년~최대 5년).

Q) 장학금을 2년만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졸업할 때까지가 아닌 6개월 단위로 일부 기간을 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 장학금을 1년만 받고 싶은데 그럼 의무복무도 1년만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법률 상 1년만 받아도 최소 2년을, 6년을 받더라도 최대 5년을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FAQ

Q)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A) 의무복무지역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FAQ

Q) 의무복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A) 의무복무는 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하고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유예하거나, 의무복무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없어진 때 즉시 의무복무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조건의 이행)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産)의 수습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FAQ

Q) 장학금의 지급 정지 또는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휴학 또는 유급 시 장학금 지급은 정지되며, 2년 이상 장학금이 정지되거나 퇴학 등으로 인해 향후 의사·간호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 ①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정학처분을 받아 학업을 일시 정지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
 2. 퇴학 또는 제적
 3.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4.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기간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
 7.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FAQ

Q) 장학금 및 이자 반환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졸업 후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 ①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조건 이행 기간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건 이행이 면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정하여진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중단이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국가시험 불합격 또는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면허취소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FAQ

Q) 만약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0조(행정처분)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를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

Q) 의무복무 기간 동안 보수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A) 의무복무 기간 동안은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보수체계로 지급받게 됩니다.

Q) 다른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3, hyein.park@nmc.or.kr) 혹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 • • • • • • •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 • • • •